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		बंध्यम प्राथित			
● 금융감독원	보도	2020.10.16.(금) 조긴	ŀ	배포	2020	0.10.15	5.(목)		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		 김 기 훈 사무관(02-2100-2962			관(02-2100-2962)			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강 한 구(02-3145-7460)			Cł TL	이 김	준 교	팀 경	당(02-3145-7466)		
	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장 임 주 혁(02-368-4276)			담 당 자	박 중	중 영	팀	장(02-368-4318)		
	손보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최 윤 석(02-3702-8523)				김영	경 산	부 경	당(02-3702-8590)		

제 목 :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. -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-

- □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, 연평균 188만원('20년 상반기)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
 - 이에 정부는 **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** 등을 거쳐 금년 3월 「**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**」을 마련·발표하였으며,
 - o **주요 후속조치** 중 하나로 **이륜차보험 제도 개선**을 추진
- □ 배달종사자들의 ^③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, ^②안전운전 의식 고취, ^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
 - (i)대인 I·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, (ii)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☞ 최대 23%(자기부담 특약 21%, 편법가입 방지 2%)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- □ 정부는 앞으로도 **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**을 위해 **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** 등과 **지속적으로 소통**해 나가겠음

I. 이륜차보험 개선 내용

- 1 대인 I·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
- □ (현황) 최근 배달플랫폼(배민, 쿠팡 등)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(배달용)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
 -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**배달종사자**가 가입하는 **유상운송용** 이륜차보험의 **손해율***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,
 - * ('19년 손해율) 유상운송용: 116.4% / 비유상운송용: 79.4% / 가정·업무용: 77.7%
 - '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'20년 상반기 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^{*}되었습니다.
 - * (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) ('18) 118만원 → ('19) 154만원 → ('20.上) 188만원
 - ⇒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**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**함에 따라 **이륜차 사고** 관련 **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**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- □ (개선방안)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 (자차) 담보에만 있으나,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 보험 대인 I·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*을 도입합니다.
 - * 0원, 25만원, 50만원, 75만원,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
 -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**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**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'대인 I 6.5% ~ 20.7%', '대물 9.6% ~ 26.3%' 수준입니다. (☞ 유상운송용 / 비유상운송용 / 가정·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)

< 담보별·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>

구 분	0원	25만원	50만원	75만원	100만원
대인 I	0%	6.5%	12.6%	16.9%	20.7%
대물	0%	9.6%	17.1%	22.5%	26.3%

※ (참고) 제도 도입경과를 보아가며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

- □ (보험료 인하효과)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(21%) 인하됩니다.
 - 향후 **안전운전 유인** 증가로 이륜차 **사고율이 낮아질 경우** 자기 부담금별 **할인율**이 더욱 **높아질**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더불어,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**무사고 유지시** 차년도에 **할인·할증등급이 개선**되어 **추가 보험료 인하**도 가능합니다.

<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>



- 2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
- □ (현황 및 문제점)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^{*}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・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^{**}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 - *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**가정·업무용으로 가입**하더라도 **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**
 - ** '19년중 가정·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, **사고발생**후 보상받기 위해 **유상운송용**으로 **계약변경**(배서)된 **사례**가 약 **650여건** 발생
 -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**유상운송 용도**를 고지한 **정직한 배달 종사자**에게 **보험료 부담이 전가**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.

(개선방안)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·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*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·	•
으로 편법 가입 하는 문제를 해소 합니다.	
* (신설) 이륜차보험 약관 제8조(보상하지않는 손해) 6.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기	

- 향후 **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**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.
- □ (보험료 인하효과) 향후 가정·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
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
 약 2%(188만원→184만원)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Ⅱ. 기대 효과

- □ **자기부담 특약** 도입 및 **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**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**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**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□ 운전자의 **안전운전 의식 고취**로 이륜차 **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** 자신과 **보행자**의 **안전이 강화**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□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.
 - ※ (상품 출시) '20.10월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 할 경우 출처를 표기
 해 주십시오.
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

이류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FAQ

- [1] 대인 I·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되나요?
- ☞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즉시 보험사에 납부하면. 보험사는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. 다만,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추후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합니다.
- [2] 자기부담금 설정시 대인 I·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거나 하나만 설정할 수 있나요?
- ☞ 현재 대인 I ·대물 자기부담금을 담보별로 달리 설정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대인·대물 담보에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은 사고발생시 대인. 대물 담보에 각각 적용* 되므로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.
 - * 대인·대물 자기부담금 50만원 설정하고, 대인 손해액 200만원, 대물 손해액 100만원 발생시 ⇒ 보상액 : 대인(200만원-50만원) + 대물(100만원-50만원) = 200만원

향후 자기부담 특약을 운영하여 보상 실무상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대인, 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.

③ 대인 I·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?

☞ 동 특별약관은 10월중 판매가 시작(보험사별로 상이)될 예정이며. 보험기간이 10.22(목)부터 시작되는 이륜차보험에 신규·갱신가입시 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
붙임2 이류차보험 통계(2019년)

- □ (가입대수) '19년 평균 98만대의 이륜차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, ^①유상운송용* 이륜차는 **2.5**만대(2.5%), ^②비유상운송용**은 **13**만대 (13.1%) ^③가정·업무용***은 **83**만대(84.3%)임
 - * 퀵서비스, 배달플랫폼(**배달의 민족** 등)을 통해 **유상**으로 **물건(음식)**을 **배달**
 - ** 법인·개인(맥도날드. 중국집 등) 자기 소유 이륜차를 통해 물건(음식)을 배달
 - *** 개인이 출퇴근 및 레저용으로 타는 경우 등

< '19년 이륜차보험 평균가입대수 현황 > (단위 : 대, %)

구 분	^① 유상운	^① 유상운송용		^② 비유상운송용		^③ 가정·업무용		합계	
T E		비중		비중		비중		비중	
법인소유	13,228	1.3	23,764	2.4	20,932	2.1	57,924	5.9	
개인소유	11,492	1.2	105,183	10.7	807,067	82.2	923,742	94.1	
합계	24,720	2.5	128,947	13.1	827,999	84.3	981,666	100.0	

- □ (손해욜) '19년 이륜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5.2%이고,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은 116.4%로 비유상운송용(79.4%) 및 가정·업무용(77.7%)에 비해 크게 높으며.
 - 특히, **배달플랫폼**(배민, 쿠팡 등)에 해당하는 **법인소유 유상운송**의 **손해율은 127.4%**로, 이륜차 평균손해율(85.2%)의 약 **1.5**배 수준

< '19년 이륜차보험 손해율 현황 >

(단위:%)

구 분	유상운송용	비유상운송용	가정·업무용	합계
법인소유	127.4	74.9	52.8	110.1
개인소유	93.0	80.2	78.3	79.9
합계	116.4	79.4	77.7	85.2

□ (보험료) 이륜차보험료는 평균 21만원이며,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154만원으로, 비유상운송용(40만원) 및 가정·업무용(14만원)에 비해 크게 높음

< '19년 이륜차보험 보험료 현황 > (단위 : 만원)

구 분	유상운송용	비유상운송용	기정·업무용	합계
법인소유	196	33	15	63
개인소유	106	41	14	18
합계	154	40	14	21